

경유차 사용제한 경과조치

제도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하여 **대체차량(전기·LPG)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4년 6월까지 신청할 경우 2024년 12월까지 경유차 사용이 임시 허용됩니다.**

- 가 (신청)전기·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*으로, '24.6월까지 택배용·통학용 경유차 사용 신청 가능함
*신청 시 신청서류와 함께 대체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
- 나 (전환)조건부 승인된 경유 차량은 '24.12월 까지* 대체차량으로 전환해야 함
*대체차량 출고 시기와 무관하게 '24.12월까지는 경과조치 신청 후 조건부 승인된 경유차 사용 가능
- 다 (사후관리)전환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임시 승인된 경유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재제조치 가능

경과조치 추진 절차



대기관리권역

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타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
『대기관리권역법』 시행령 [별표 1]

권역	지역구분	지역범위
수도권	서울	전 지역
	인천	옹진군(옹진군 영흥면은 제외)을 제외한 전 지역
	경기	수원시, 고양시, 성남시, 용인시, 부천시, 안산시, 남양주시, 안양시, 화성시, 평택시, 의정부시, 시흥시, 파주시, 김포시, 광명시, 광주시, 군포시, 오산시, 이천시, 양주시, 안성시, 구리시, 포천시, 의왕시, 하남시, 여주시, 동두천시, 과천시
중부권	대전	전 지역
	세종	전 지역
	충북	청주시, 충주시, 제천시, 진천군, 음성군, 단양군
	충남	천안시, 공주시, 보령시, 아산시, 서산시, 논산시, 계룡시, 당진시, 부여군, 서천군, 청양군, 홍성군, 예산군, 태안군
	전북	전주시, 군산시, 익산시
남부권	광주	전 지역
	전남	목포시, 여수시, 순천시, 나주시, 광양시, 영암군
동남권	부산	전 지역
	대구	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
	울산	전 지역
	경북	포항시, 경주시, 구미시, 영천시, 경산시, 칠곡군
	경남	창원시, 진주시, 김해시, 양산시, 고성군, 하동군

대기관리권역 내

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



경유차 사용제한 Q&A

Q 특정 용도 경유차 사용제한 제도란?

A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(이하 대기관리권역법)」 제28조 및 부칙 제1조·제3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택배용 화물차(배번호)와 어린이 통학버스로 경유차를 신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(신규 및 대폐차 포함)

※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특정 용도로 사용하던 경유차는 소유자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Q 대기관리권역은 어디인가요?

- A**
- 수도권(서울 전역, 인천·경기 일부 제외 전역)
 - 중부권(대전·세종 전역, 충북·충남·전북 일부)
 - 남부권(광주 전역, 전남 일부)
 - 동남권(부산·울산 전역, 대구 일부 제외 전역, 경북·경남 일부)

▶ 상세내용 5쪽 참조

Q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서도 경유차를 신규로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?

A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서는 경유차 신규 신고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.

Q 2024년부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경유 택배용 화물차 및 어린이 통학버스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?

A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(법 시행 전 신고·운행+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), 기존 택배용 경유차는 사용 가능하며, 신규사용만 제한됩니다.

택배용 경유차 사용제한

주요내용

'24.1.1.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화물차의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

- 기존 택배용 경유차는 계속 운행 가능하며, 기존에 택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경유차의 신규사용(신규허가·대폐차)만 제한

LPG 화물차 택배용 우선 출고

자동차 제작사(현대·기아)는 매일 신형 LPG 1톤 화물차(포터·봉고) 750대*를 택배 차주에 우선 출고 예정

* 포터(현대): 250대 / 봉고(기아) : 500대 (향후 출고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
우선 출고 신청 절차



경과조치

경유차 임시 허용 ▶ 상세내용 4쪽 참조

대체차량(전기·LPG) 전환을 조건으로 경유차 사용 임시 허용 ('24.6월까지 신청, '24.12월 까지 사용)

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

주요내용

'24.1.1.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되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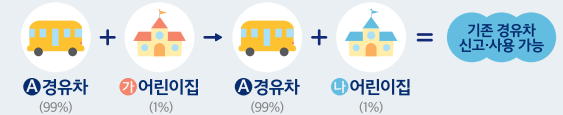
- 기존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운행된 경유차는 차량의 소유자 변경이 없는 한 계속하여 사용 가능하며, 기존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경유차의 신규사용만 제한

주요 적용 사례

사례 1

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인데 공동명의로 새로운 교육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신고·사용이 제한되나요?

▶ '23년 12월 31일 이전 신고된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의 공동명의로 일부만 변경(운전자는 동일하고, 교육기관만 변경)되는 경우에는 신고·사용 가능



사례 2

어린이집 원장인데 통학버스 운송사를 변경하는 경우 경유차 신고·사용이 제한되나요?

▶ 새로 계약하는 B운송사가 '23년 12월 31일 이전 신고·사용하던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한다면, 신고·사용 가능



경과조치

경유차 임시 허용 ▶ 상세내용 4쪽 참조

대체차량(전기·LPG) 전환을 조건으로 경유차 사용 임시 허용 ('24.6월까지 신청, '24.12월 까지 사용)



1



2



3

